

○ B2B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(외화팩토링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B2B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(외화팩토링)(구 외환은행)	B2B납품대금지급업무대행계약서(외화팩토링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외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内 타 약관, 약정서명	예금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B2B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구 외환은행)	예금거래기본약관 B2B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	금지용어 일괄 변경 "갑", "을" 제14조 (계약서 효력) ② “ 본 계약”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느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	금지용어 일괄 변경 "은행", "구매기업" 제14조 (계약서 효력) ② “ 본 계약”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	용어변경 : 갑 → 은행, 을 → 구매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: 계약의 자동연장 의사표시 간주 조항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